의안번호	제 3 호
의 결	2010년 6월 30일
연월일	(제 241 회)

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10년 6월 18일

충청북도 교육·학에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호 241-3

제출연월일: 2010. 6. 18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교육청 또는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 및 발급 가능한 교육관련 민원서류에 대하여 온라인민원 이용 활성화와 대 국민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수수료 무료화를 추진하는 한편, 그 밖에 알 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등 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함(안 제5조제5항 신설)
- 나. 법제처의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에 의하여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
 - 1) 띄어쓰기
 - 항 번호(①, ②) 다음에는 한 칸 띄고 본문을 씀
 - 각조, 각항, 각호, 각목 \rightarrow 각 \lor 조, 각 \lor 항, 각 \lor 호, 각 \lor 목
 - 2) 용어정비 등
 - 의한, 의하여, 의한다 → 따른, 따라, 따른다
 - ·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→ 제○조에 따라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:

(1) 신・구조문대비표, 별첨

(2) 입법예고(2010. 5. 20 . ~ 2010. 6. 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부패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(5) 이 조례안의 내용 중 "진하게 표시한 부분"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,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 등을 바꾸는 사항임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제137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137조 및 제139조 에 따라"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) ①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배정수수료
- 2. 시험수수료
- 3. 검정고시수수료
- 4. 제증명수수료
- 5. 정보공개수수료
- ② 수수료의 징수 금액은 별표 1, 별표 2와 같다. 다만,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해당금액의 2배를 징수한다.

제3조 중 "의한다"를 "따른다"로 한다.

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4조(수수료 징수 방법) ① 수수료의 징수는 증명 및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, 시험·고시 및 배정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로부터 별표 1, 별표 2의 수수료 징수금액에 따라 징수한다.
 - ② 별표 1의 증명사항으로 여러 건의 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각 사항마다 1건으로 하며, 같은 내용의 증명을 2통 이상청구할 때에는 매 통마다 1건으로 하고, 여러 명을 열기하여 청구할 경

우에는 매 인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.

- ③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- 제5조(수수료 징수 면제) ①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·발급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
 - ② 신원 및 학적에 관한 증명을 발급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 -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,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제9항, 「5・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2조제1항,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
 - 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, 「장애 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, 「아동복지법」 제2조,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 수교육법」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자
 - ③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
 - ④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
 - ⑤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
 - ⑥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	제1조(목적)
치법」 <u>제137조 및 제139조의</u>	제137조 및 제139조에
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	따라
및 산하기관과 각급학교에서 징	
수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	
수수료(이하"수수료"라 한	
다)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	
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) ①	제2조(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) ①
수수료라 함은 배정수수료, 시	수수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
험수수료, 검정고시수수료, 제	<u>같다.</u>
증명수수료 및 정보공개수수료	<u>1. 배정수수료</u>
를 말한다.	2. 시험수수료
	3. 검정고시수수료
	4. 제증명수수료
	5. 정보공개수수료
②수수료의 정수 금액은 <u>별표1,</u>	② 수수료의 징수 금액은 별표
별표2와 같다. 다만, 외국문으	<u>1, 별표 2와</u> 같다. 다만, 외국
로 발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	문으로 발행하는 제증명에 대한
수료는 <u>별표1의</u> 해당금액의 2배	수수료는 <u>별표 1의</u> 해당금액의
를 징수한다.	2배를 징수한다.
제3조(적용범위) 수수료의 징수	제3조(적용범위)
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	
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	

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 다.

제4조(수수료 징수 방법) ①수수 료의 징수는 증명 및 정보공개 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, 시험·고시 및 배정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로부터 별표 1, 별표 2의 수수료 징수금액에 의하여 징수한다.

②[별표1]의 증명사항으로 여 러 건의 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각 사 항마다 1건으로 하며, 같은 내 용의 증명을 2통이상 청구할 때 에는 매 통마다 1건으로 하고, 여러명을 열기하여 청구할 경우 에는 매 인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.

③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 환하지 아니한다.

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 · 발급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.

다.

제4조(수수료 징수 방법) ① 수수 료의 징수는 증명 및 정보공개 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, 시험 · 고시 및 배정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로부터 별표 1, 별표 2의 수수료 징수금액에 따라 징수한다.

② 별표 1의 증명사항으로 여러 건의 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 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각 사항 마다 1건으로 하며, 같은 내용 의 증명을 2통 이상 청구할 때 에는 매 통마다 1건으로 하고, 여러 명을 열기하여 청구할 경 우에는 매 인에 대하여 수수료 를 징수한다.

③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 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수수료 징수 면제) ①국가 제5조(수수료 징수 면제) ① 국가 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 • 발급하는 증 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- ②신원 및 학적에 관한 증명을 발급 받는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하다.
-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제1 항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, 「고엽 | 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| 관한 법률」제7조 제9항, 「5 •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2조제1항, 「특수임」 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1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
- 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 5조,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 4조,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 제2항,「아동복지법」제2조.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| 법」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자 ③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 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 ④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 |

<신 설>

명

- ② 신원 및 학적에 관한 증명을 발급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하다.
-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: 제22조제1 항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, 「고엽 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 한 법률」제7조제9항, 「5·1 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」제12조제1항, 「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| 제11조제1항에 따 른 교육지원 대상자
- 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 5조,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 4조,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 제2항,「아동복지법」제2조,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법」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자 ③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 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
- ④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 증명
- ⑤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

⑤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

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

⑥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

관계법령 발췌

[지방자치법]

- 제137조 (수수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. 다만,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139조 (사용료의 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 -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